노사협의회 현황

□ 협의회 구성 및 기능

○ 구성
-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8인
- 사용자위원은 사장과 사장이 위촉하는 자, 근로자 위원은 노동조합 위원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
-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

○ 기능
-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을 위해 협의

□ 협의회 운영방법

○ 회의개최
-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
- 임시회의는 사용자측 대표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근로자측 대표나 근로자측 위원 과반수 이상이 서명하여 소집요구를 한 때 개최

○ 회의소집
- 의장은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함. 다만,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 등을 소집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음

○ 정족수
-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

□ 협의회 의결사항

○ 아래 링크 이동 후 경영공시 내 기관별 공시에서 한국석유공사 검색 후 '노동조합 관련현황' 중 '노사협의회 의결사항' 항목 참조 (http://www.alio.go.kr)